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7. 03. 21

개정 2026. 09. 03

제1조(목적)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업규정”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 및 수수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 관련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판매,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운용보수는 운용기간 동안 미리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받는 금전을 말하고,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업규정 제4-6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받는다.
 - 나. 판매회사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환매 또는 투자자문·투자일임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지급시기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 나.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 다.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한다.
 - 라. 투자자문수수료: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한다.
3.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구분: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본수수료: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 또는 투자자문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약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나. 성과수수료: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약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다만, 회사는 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 ②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성과수수료 부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 ① 수수료는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및 성과보수 또는 성과수수료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④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설명 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통보)

-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시기 및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제정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